

**특집논문**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국제규제와 지역성장**  
세계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다자간 섬유협정\*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gional Growth:  
A Case Study of Multifiber Arrangement of WTO

최은경\*\*

본 연구는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계생산네트워크(GPN) 관점을 통해 분석한다. GPN 이론은 기업 및 국가, 시민사회 등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 외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국제규제체제의 경우, 그 중요성은 널리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규제로 인해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로 인한 생산지리와 지역성장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임으로써, 세계지역경제성장에서 국제규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적 논의를 통해 국제규제가 GPN과 지역자산의 전략적 결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후 구체적으로 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Multifiber Arrangement(MFA) 사례를 통해 이를 논증할 것이다. 주로 문헌분석과 시계열적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분석 결과 선진국, 주요 수출개도국, 최빈개도국별로 국제규제로 인한 지역성장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세계생산네트워크, 국제 규제, 지역 성장, 세계생산지리, WTO/MFA

\* 이 연구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3959).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ekchoi@korea.ac.kr)

## 1. 서론

본 연구는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 규제가 세계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에 어떠한 역동성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세계생산네트워크(이하 GPN) 이론은 기업 및 국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다규모적 지리적 차원에서 각각의 제도와 권력의 영향 아래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가치를 창출, 포획, 착근시키는지, 그리하여 중국에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해주는 이론이다. 세계화가 다양한 행위주체의 참여, 지역 간의 긴밀한 연결과 상호의존성 증대, 복잡성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때(김선혁, 2008; Kim, 2011), GPN 이론은 이러한 특징을 거의 모두 포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 및 지역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Coe et al.(2008)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간 GPN 논의에서 이뤄진 개념적·실증적 연구를 종합하여 GPN의 핵심개념과 강점, 그리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영역과 연구 방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GPN의 이론적 잠재성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 외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그 중 국제 제도 및 규제 체제(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ulatory systems)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모든 GPN은 다규모적 규제체제 내에 착근되어 있고 WTO 같은 국제 규제 기구가 GPN의 지리성에 매우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규제체제가 GPN 연구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Coe et al., 2008: 9, 11 of 25).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개념적으로만 인지되어 오던 국제 규제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례로는 Coe et al.(2008)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 MFA)을 살펴보았다. MFA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의류섬유 산업 수출 물량을 제한했던 WTO의 협정으로 1974년 최초 시행되어 2005년에 완전히 철폐되었다(WTO website). 저가의 의류섬유 상품이 대량 유입되자 자국의 의류섬유 산업에 크게 타격을 입은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수출물량에 쿼터제를 부과한 규제이다.

MFA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국제규제와 관련하여 단적으로 언급될 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성장과 관련하여 규제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MFA는 경제와 관련된 국제규제이므로 지역성장에의 영향을 논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성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GPN이 세계 산업의 형성과 운영, 그리고 이의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자 태동된 개념(MacKinnon, 2012)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의에서는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경제 교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WTO의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 대상에 대한 포괄성이다. 국제 규제는 특성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준수여부가 결정되므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WTO의 경우는 참여국이 약 160개국(2014년 기준) 정도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의 약 97퍼센트에 대해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규제의 포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일반화가 그만큼 용이하다는 뜻이 된다. 셋째, 사회문제는 그 특성상 비교집단을 구하기 힘들다. 특히나 그 적용범위가 거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규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MFA는 최초 시행된 이후 20~30년간 지속된 후 철폐되었고, 그 이후로도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즉, 시작과 철폐 시점이 분명하므로 규제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고, 시행 기간도 일정기간 지속되어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횡적인 비교대신 종적인 비교를 통하여 규제의 영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MFA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제규제는 특정 지역의 시장 접근을 허용 혹은 제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자산과 GPN의 전략적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지역 내 생산요소는 GPN에 포섭 혹은 배제되고 결국 GPN의 지리적 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생산지리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규제의 작동 기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는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국제규제의 중요성과 지역성장에 대한 함의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GPN의 이론적 논거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진행에 앞서 혼동의 소지를 없애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규제’는 GPN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국제 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s)’ 혹은 ‘국제 규제 체제(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제도(institutions)라고 표현할 때는 ‘제도적 기구 혹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국제제도는 WTO와 같은 국제적 제도 기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 제도는 국제적 규제 체제와 동의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MFA와 같이 규제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국제 제도 혹은 국제규제체제로 통칭한 것은 규제 또한 제도 혹은 제도적 기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국제 제도 기구의 영향력보다는 규제 자체로 좁혀져 있기에 이의 의미를 살려 ‘국제 제도’가 아닌 ‘국제 규제’로 표현하였고, 기존 논의를 언급하거나 문맥상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만 기존논의에서 사용되었던 ‘국제제도’ 혹은 ‘국제 규제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GPN 논의 내에서 개념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의 대상은 ‘제도’가 아닌 ‘규제’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GPN과 지역의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지역성장은 바

로 이들의 전략적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Coe et al., 2004). 이후 국제 규제가 이러한 전략적 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GPN의 지리성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제 규제 중 구체적으로 WTO의 MFA를 선정하여, 이것이 세계 지역성장의 지형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문헌분석과 시계열적 데이터를 통해 해당 규제 및 그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되, 주요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우리나라 정책가 및 개도국 정부에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을 논하며 마치도록 한다.

## 2. 국제 규제로 인한 생산지리의 변화

### 1) GPN과 지역의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

GPN은 기업과 기업 외 행위자들이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재화 및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네트워크로, GPN 이론은 세계 산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Coe et al., 2004). 이는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s: GCC)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 이론도 동일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은 개념적 측면에서 GPN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PN은 이들과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먼저, GPN은 체인이 아닌 네트워크의 메타포를 도입함으로써 선형이 아닌 순환적 관계를 강조하고, 이로써 생산, 분배, 소비의 양상이 매우 유동적이고 관계적임을 보여준다(Henderson, et al., 2002). ‘관계적’이라는 용어에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영향의 역동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여 실증적으로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둘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자에게도 GCCs/GVCs은

그 분석 대상이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GPN은 국가 및 시민사회, 노동조합, 소비자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여 기업 외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도록 한다(Dicken, 2011). 셋째로는 지리적 규모의 차원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위 수준의 지방(locals)에서부터 국가(nation states), 지역(regions), 초국가(supra-national)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지리적 요소를 포괄하여, 동일 수준의 지역들만이 아니라 다차원적 지역 관계를 아우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은 GPN을 단일한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표현되게 한다(Coe et al., 2008; Henderson et al., 2002).

이렇듯 다양한 행위주체와 순환적 네트워크의 관계, 그리고 지리적 규모의 다차원성은 설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이론의 간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 경제를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묘사해주는 장점이 있다(Coe et al., 2008). 현실세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 지역마다 상이한 발전과 경제의 공간적 불균형(unevenness)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성장 및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이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GPN 논의에서는 지역 발전을 GPN과 지역적 자산이 전략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설명한다. GPN은 국가 혹은 지역의 지리적 경계선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므로 지역 내에 착근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 외적 요인이기도 하며, 이와 같은 외부적 연결성에 대한 고려는 GPN 논의가 지역 성장 및 발전 담론에 공헌한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MacKinnon, 2012). 그리고 세계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할 수 있다. 초창기 논의에서는 GPN이 지역 자산과 전략적으로 결합을 이루되 지역의 제도적 기구(정부 기관, 노동 조직, 기업 연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GPN 구성요소로는 대표적으로 핵심기업(focal firm)과 자회사 및 하청기업, 소비자 등을, 지역자산으로는 기술, 조직, 영토 등을 설

정하였다(Coe et al., 2004). 지역 자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 설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가령 소비자는 GPN의 구성요소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술은 지역의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TNC의 자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후속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구성 요인들은 고정적이고 특징적인 변수로 설정되기보다 각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PN과 지역자산의 전략적 결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핵심적으로 명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략적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행위자와 이들 간 힘의 관계, 그리고 지역 간 차이로 인한 지리적 개별성이다(Coe et al., 2008; Mackinnon, 2012; Mackinnon, 2013; Yang et al., 2009; Yang, 2013; Wei and Liao, 2013).

GPN과 지역자산의 결합은 시장법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입, 조정, 중재되는 것이다(Yang et al., 2009).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행위자는 역시 기업과 국가(state)이다. 특히 정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협상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규제 등을 활용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GPN의 모든 요소가 일종의 정치적 구조물 속에서 규제를 받으므로 이의 기본 단위인 국가가 GPN과 지역자산의 전략적 결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GPN과 지역자산이 결합한다고는 하나 이는 협상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협상을 수행하는 주체는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정부이므로,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과 지역이 전략적으로 결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를 통해 지역 외적 요소인 GPN과 지역자산이 전략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주요 강조점인 힘의 불균형(power asymmetry)과도 연결된다. 전략적 결합을 위한 협상에서는 행위자의 필요와 보유자원에 따라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역학 관계는 국가의 지리적인 고착성과 이와 상반되는 TNC

의 이동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Coe et al., 2008).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혹은 국가가 경쟁하므로 기업이 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 같이 해당 시장의 진입을 희망하는 TNC가 많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통제하므로 국가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TNC들은 국가의 각종 규제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된다. 힘의 차이는 추후 전략적 결합을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GPN과 지역의 결합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개별성을 갖는다. GPN의 모든 요소는 문자 그대로 특정 지역 내에서 작동(operate)하기 때문에, GPN의 구체적인 성격과 형성은 해당지역의 사회정치적, 제도적,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oe et al., 2008).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따라 다른 관행과 과정을 통해 구현되기에,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전략적 결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Yang et al., 2009).

전략적 결합을 위한 협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이 제공할 수 있을 때 상대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 증가하게 되고, 역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상대적 힘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술과 투자 자본 등을 지닌 TNC들은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에 상대에 대한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지만, TNC들이 속한 산업이 경쟁이 치열하거나 투자 유치국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이라면 이들의 상대적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Dicken, 2011). 즉,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증가하게 되는데, 상대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상대에 대한 협상력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상대가 꺼려하거나 혹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타의 요소 존재 여부도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불안정성, 노동의 경직성 등은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즉 협상력은 상대의 필요와 자신이 보유한 자원, 그리고 제약요소의 총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협상력의 근원이 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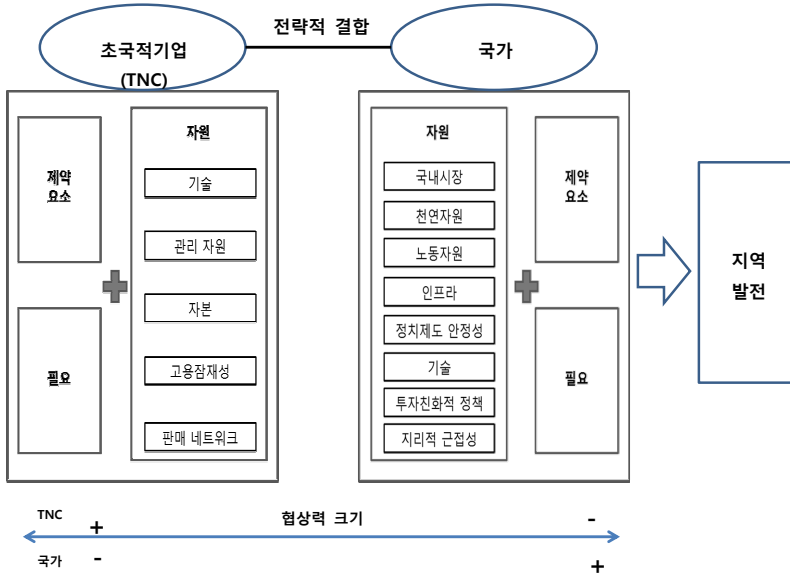


가 도리어 매우 열악할 경우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양질의 노동력은 협상력의 자원이 되지만 만약 노동력의 질이 매우 낮고 임금수준만 높다면 이는 지역의 제약요소가 되기도 한다. 즉, 자원을 관리함에 따라 협상력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Dicken, 2011).

또한 자신이 가진 보유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대가 이를 필요로 않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상대의 필요와 자신의 보유자원이 일치해야 협상력이 증대되는 것이다. 가령 첨단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TNC들의 경우 값싼 노동력은 자신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기업 행정서비스가 열악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투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과거 소련과 같이 공산권에 속하였으나 기술이 발달된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산업에 속하는 TNC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 저부가가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노동집약 산업에 해당하는 TNC들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규모는 작더라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 산업이나 R&D 시설을 보다 환영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TNC와 지역의 결합은 매우 복잡해지고, 산업별로 각자의 강점이 의미하는바 혹은 가중치도 달라진다. 이것이 지역과 TNC가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이유이고 나아가 최근 논의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상대의 필요가 충족되었거나 자신이 더 이상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할 경우 탈결합 혹은 분리(decoupling)하기도 하며, 또는 달라진 필요에 의해 재결합(recoupling)하는 이유이다 (Mackinnon, 2012; Mackinnon, 2013; Yang, 2013).

이러한 관계 메커니즘에 의하면 지역/국가의 힘(power)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에 TNC를 유치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포획할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 성장 발전 가능성이 증대됨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보유자원 및 제약요소, 상대의 필요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TNC와 국가의 상대

<그림 1> TNCs와 지역/국가의 전략적 결합



자료: Dicken, 2011: 232에서 수정 및 보완.

적 힘은 하단의 화살표 중 한 지점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지점이 자신에게 가까울수록 자신의 상대적 힘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Dicken, 2011).

지역/국가의 보유 자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국내 소비시장의 크기와 목표(target) 시장과의 근접성, 자원 확보 가능성, 노동의 질과 비용, 인프라 구비, 거시경제 및 정치적 안정성과 그 외 투자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제약 요소는 세계경제와의 낮은 통합성, TNCs 유치 경쟁 심화, 국제수지 악화, 대외의존도,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될 수 있다(Dicken, 2011). TNCs의 경우는 기술과 자본, 관리적 자원, 수출경쟁력, 브랜드가치, 고용창출능력, 판촉망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 등이 힘의 원천이 되고, 해당산업의 경쟁 심화와 투자국의 경쟁력 등은 자신의 상대적 우월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Dicken, 2011). 이 외에 다른 요인들이 독특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시공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사

건이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

## 2) 국제 규제로 인한 세계생산지리의 변화

국제 규제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 먼저 국제 규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규제는 그 영향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므로 다양한 지역들과 다규모적 지리를 포괄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EU나 NAFTA에서 비롯된 것과 같이 그 범위가 지역적(regional)인 것도 있고, IMF와 WTO에 의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다. 종류 또한 경제·안보·노동 등 범위가 매우 폭넓어 그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도 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규제나 정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국제 규제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는 특정한 국제 제도적 기구를 선정하고 이의 여러 규제들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국제 규제가 지역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역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국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WTO를 살펴보고자 한다.

WTO는 세계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가능한 한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종의 규범 집합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불어 각국 정부가 협상을 수행하는 협상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WTO website).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무역을 촉진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WTO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역은 지향점일 뿐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한적 통상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WTO는 회원국의 협상을 통해 체결되는 협약 공동체이므로 각국의 제한적 규제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Winham, 2005), 동일한 이유로 MFN(Most-Favored Nations, 최혜국대우)<sup>1)</sup>과 같은 비차별적 기본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차별적 조치를 허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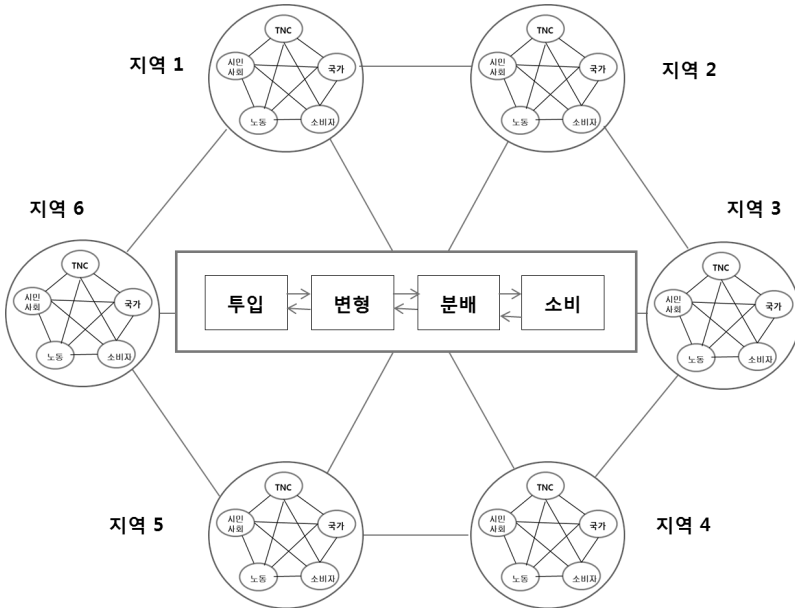
있다. 차별적 조치의 단적인 예는 협약 당사자끼리만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FTA나 NAFTA와 같은 양자 간/복수 간 지역 협정이 있다. 제한적 규제들을 허용하는 예로는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시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와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이에 대응하여 수입국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WTO 내에서 시행되는 규정들은 정리해보면, 모두 ‘제한적-촉진적’, 그리고 ‘차별적-비차별적’의 두 가지 차원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촉진적이고 비차별적인 성격이므로 제한적이면서도 차별적인 규정이 지역발전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국제규제로 인한 GPN의 역동적 변화를 더 잘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GPN의 프레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TNC와 지역/국가의 협상을 통해 GPN과 지역자산은 전략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결합을 ‘지역’과 ‘행위자’ 위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GPN이 지역과 전략적 결합을 하게 되면 이의 주체인 TNC와 지역 행위자들이 연결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또한 이는 해당 지역이 외부와 연결됨을 뜻하므로 지역 내 생산요소 및 네트워크가 기존의 GPN에 편입되기도 하고 새로운 GPN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GPN 속에서 각 지역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각 산업의 생산요소가 투입되고 변형되어 최종 생산된 다음에는 각 지역에 판매 분배되어 소비되게 된

- 1)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고 동일한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는 원칙으로, 가령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A국에 10%를 부과하였다면, B국과 C국 등 다른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해야 함을 뜻한다.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조항과 함께 WTO의 대표적인 비차별적(non-discriminate) 조항이다. 즉 MFN은 외부국가들 간의 차별을, 내국민 대우는 국내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조항으로, GATT 1조와 3조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GATT/WTO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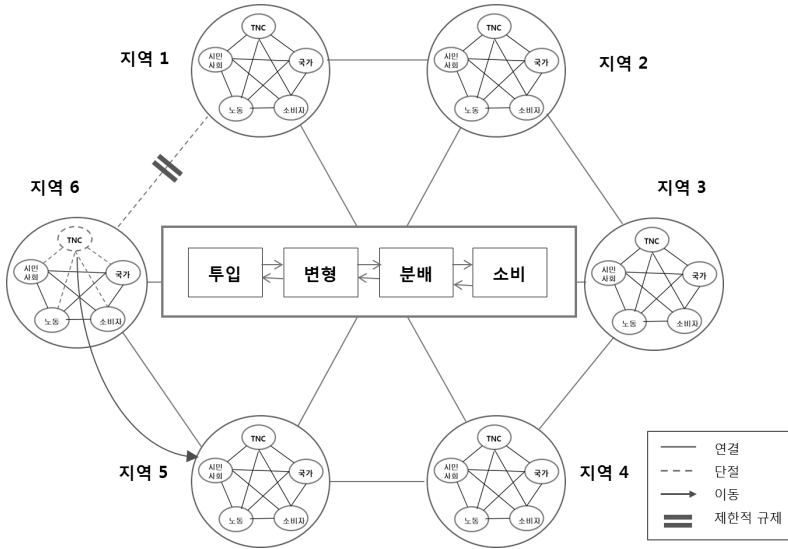
<그림 2> GPN과 지역의 전략적 결합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지역은 가치를 생성, 포획, 착근시켜 결국 지역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제한적, 차별적 국제 규제는 이러한 GPN에 역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차별적’이므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행위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되며, ‘제한적’이므로 지역 간 혹은 행위자 간의 연결성은 단절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 규제가 지역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협상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TNC가 해당 지역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경우, 지리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지역 내 행위자 혹은 생산요소와는 달리 이동성(mobility)을 지니는 TNC는 전략적 결합을 해체하게 된다. 즉, TNC와 지역의 분리(decoupling)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TNC는 다른 지역과 새롭게 전략적 결합을 추구하여 결국 GPN의 지형에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3>과

<그림 3> 국제규제로 인한 생산지리의 변화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TO와 같은 국제 제도적 기구가 특정 지역 혹은 원산지에 대해 제한적 규제를 실시하여, <그림 3>같이 ‘지역 1’의 시장에 대해 ‘지역 6’에서 생산된 제품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역 6’과 전략적 결합을 맺었던 TNC는 ‘지역 1’의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6’과의 전략적 결합을 해체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지역 6’에 지리적으로 착근되었던 TNC에게 ‘지역 1’이 중요할수록, 그리고 ‘지역 1’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해당 TNC가 ‘지역 6’과의 전략적 결합을 해체할 가능성은 커진다. 또한 이 때 요구되는 비용이 적을수록 TNC는 더 쉽게 지리적 이동을 감행하게 된다. 비용편의 분석을 통해 전략적 결합의 해체를 결정했다면, ‘지역 6’을 제외한 투자 후보 지역 중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역과 새로운 전략적 결합을 맺어 중국에는 세계생산지리가 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변화는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지역 6’의 TNC가 ‘지역 5’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지역 5’의 지역적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TNC와의 전략적 결합시 ‘지역 5’의 협상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역 5에 비해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지역의 TNC들은 생산기지를 ‘지역 5’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GPN의 생산 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또 다른 규제들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면 GPN 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되어 결국 지역발전의 양상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국제규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MFA로 인한 세계생산지리의 변화

#### 1) 국제제도의 사례: 다자간 섬유협정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re Arrangement)이란 의류섬유 산업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해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다. 이는 WTO의 전신인 GATT 체제하에 있을 때 체결된 조약으로, 1974년에 체결되어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WTO website). 하지만, 갑작스런 쿼터 철폐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년간의 협정 철회(phase-out) 기간을 두었다. 즉, 2005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철회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국제규제에 대한 앞선 논의에 따르면 MFA는 차별적이면서도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다. WTO가 지역 협정을 허용하고 있을지언정, GATT/WTO 내에서 이뤄지는 협정은 주로 모든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하지만 MFA는 이에 반해, 협상을 체결한 두 국가에게

만 효력을 발휘하는 협정이다. 국내·외의 차별은 물론이고 회원국 간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WTO의 기본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협정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GATT 7조에 명시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항 때문이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① 급격한 수입 증가와 ② 이로 인한 자국 산업의 폐해(disruption)가 증명될 경우, 일정기간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 자국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에서 폐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으로 인해 보호무역적 조치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이러한 쿼터 부과가 급속도로 확산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MFA로 인해 수출에 제약을 당했던 개도국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MFA를 완전히 철회하기로 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이 체결되었다. 갑작스런 철회로 인한 수입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MFA를 2005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이의 구체적인 철회 스케줄은 <표 1>과 같다.

하지만 ATC의 철회 관련 조항은 철회해야 할 비율만을 명시할 뿐, 품목의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쿼터부과국들이 철회 품목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쿼터 철회를 반기지 않는 국가들은 국내 산업에 거의 영향이 없는 품목부터 철회를 하거나 실제 수입물량이 쿼터제한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들 위주로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철회스케줄은 철회 최소 의무 비율만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철회 여부는 국가의 자율에 맡기므로 의무 철회 비율이 마지막 단계에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철회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최대한 철회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회 조항의 융통성과 재량권로 인해 MFA가 원래의 취지대로 점진적으로 철회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까지 상당부분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나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Naumann, 2006).



&lt;표 1&gt; MFA 철회 단계

	상품 철회 비율(총)	상품 철회 비율(매년)
1단계 (1995.1.1 ~ 1997.12.31)	16%(최소, 1990년 기준)	6.96%
2단계 (1998.1.1 ~ 2001.12.31)	17%	8.7%
3단계 (2002.1.1 ~ 2004.12.31)	18%	11.05%
4단계 (2005.1.1)	49%(최대)	0

\*상품 철회비율: 제한철회상품 품목수 / 총 제한상품 품목 수  
출처: WTO website

## 2) 지역별 세계 생산지리의 변화

### (1) 쿼터 부과국 -생산지리 유지

MFA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과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주요 쿼터 부과국 중, 수출입 물량 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과 EU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에서 보여 주듯, 미국의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이 MFA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나, 2005년 이후에는 그 성장 폭이 서서히 감소 혹은 정체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은 MFA가 폐지되기 시작하는 1995년을 기점으로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쿼터를 부과하던 MFA로 인해 섬유 수입이 억제되어 자국산업이 일정부분 보호되어 기존의 가치를 계속 강화하고 포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EU의 경우 미국보다는 수출입액이 크지만 2000년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하지만 수출에 비해서는 수입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류 산업의 경우, 미국은 MFA의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량이 MFA가 폐지 기간인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

&lt;표 2&gt; EU와 미국의 의류섬유 산업 수출입

(단위: US\$, 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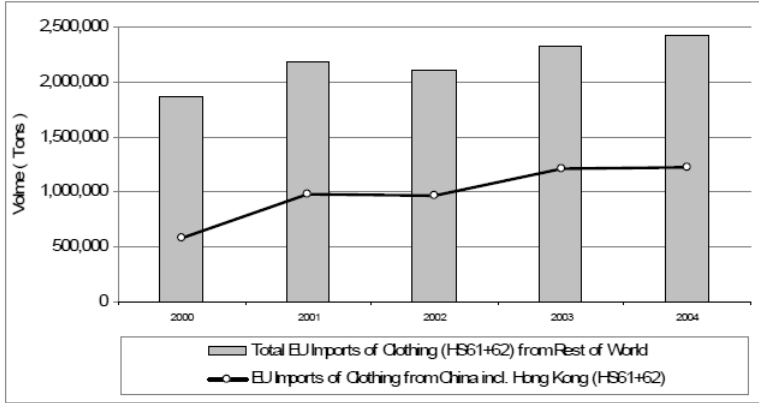
	섬유산업				의류산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EU	US	EU	US	EU	US	EU	US
1980		3,757		2,542		1,263		6,943
1985		2,541		4,977		785		16,201
1990		5,039		6,730		2,565		26,977
1995		7,372		10,441		6,651		41,367
2000	56,737	10,952	57,445	15,985	56,240	8,629	83,456	67,115
2005	70,498	12,398	71,602	22,538	85,592	5,006	132,099	80,071
2010	67,881	12,169	73,944	23,375	100,177	4,694	166,637	81,939
2011	76,959	13,791	84,606	25,359	116,804	5,233	190,746	88,584
2012	69,366	13,485	74,118	25,956	108,896	5,614	170,058	87,957

출처: Comtrade

고, 수출의 경우는 오히려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수출이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섬유산업과 동일하게 MFA로 인해 자국 의류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가치를 포획할 수 있었으나, MFA가 폐지됨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기존의 쿼터 부과국은 MFA라는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의류섬유산업 생산네트워크를 유지시키고 TNC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의류섬유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되어 기술과 디자인 등의 고부가가치 요소에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Nordás, 2004). 즉, 의류섬유 산업에서 기존에 생성되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포획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켜낼 뿐 아니라 더 확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의 대 EU 수출



자료: Naumann(200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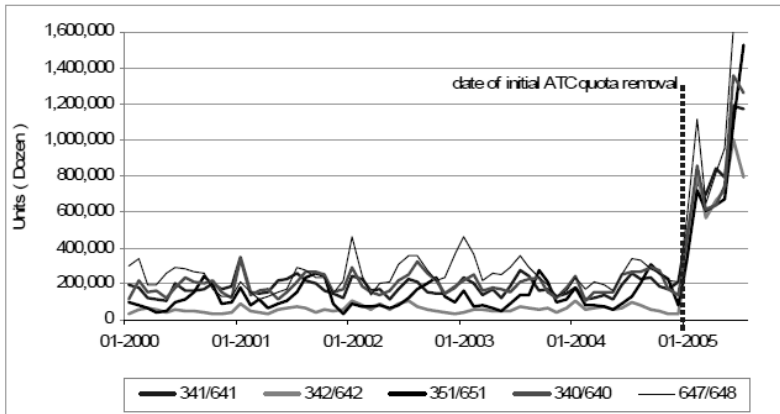
## (2) 주요수출국-생산지리의 이동

MFA로 인해 쿼터 제약을 부과 받은 주요 수출국 기업들 중 일부는 자국을 떠나 쿼터 제약이 없는 국가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거나 외주(outsourcing)를 주어 수출량 제한을 피하고자 하였다. 기존 주요 수출국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만과 중국, 홍콩, 인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레소토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케냐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Rasiah & Ofreneo, 2009).

기존 주요수출국들은 MFA로 인해 제약을 받았으나 워낙 강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MFA로 인해 수출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오히려 MFA가 폐지된 이후의 수출량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MFA가 수출에 가져온 영향을 역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중국을 살펴보기로 하며, MFA 폐지 이후 세계 의류섬유 산업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에 대한 중국의 수출량 변화를 보기로 한다.

중국의 의류섬유산업(HS code 61과 62를 기준)의 대 EU 수출량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MFA 폐지기간인 2000~2004년 사이에 EU의

&lt;그림 5&gt;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출처: Naumann(2006)에서 재인용.

\* (쿼터 범주) 341/641-면/인조섬유 셔츠(편물 제외), 342/642-면/인조섬유 스커트, 351/651-면/인조 섬유 파자마/나이트웨어, 340/640-남성용 면/인조섬유 셔츠(편물 제외), 647/648-인조섬유 바지.

의류섬유 품목의 수입량은 늘어났고, 더불어 중국(홍콩 포함)에서의 수입량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총 수입량의 증가 폭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 또한 전체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만에 약 1/3 미만에서(2000년 기준) 절반가량으로 증가하였다(2004년 기준). 이처럼 MFA가 폐지된 이후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중국의 대 EU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MFA로 인해 중국 의류섬유 산업의 수출이 억제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MFA 철폐 스케줄의 마지막까지 쿼터의 상당부분을 유지하며 터키 등과 함께 또 다른 수출제약 협정을 체결할 것을 꾀하다, 막바지에 이르러 결국 완전히 철폐약속을 이행하였다(Naumann, 2006).

이에, <그림 5>를 보면 2005년 1월 쿼터 완전철폐의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세부품목별로 모두 급격하게 상승함을 볼 수

&lt; 표 3 &gt; 각국의 의류섬유 산업의 수출량 변화

	수출액(US\$, 백만)			총 수출 대비 비중(%)	
	1990	2000	2006	2000	2006
총 세계	108,129	198,094	311,410	3.2	2.6
방글라데시	643	4,162	7,897	75.8	76.6
불가리아	NA	701	1,826	14.5	12.1
미얀마	12	800	386	48.6	9.1
캄보디아	0	970	2,675	69.8	70.4
캐나다	328	2,077	1,797	0.8	0.5
중국	9,669	36,071	95,388	14.5	9.8
도미니카 공화국	782	2,555	1,642	44.5	25.5
엘살바도르	184	1,637	1,498	56.9	42.6
유럽연합(EU)	NA	53,273	83,415	2.2	1.8
과테말라	24	49	1,557	1.8	25.8
온두라스	64	2,324	2,770	63.0	57.5
홍콩	15,406	24,214	8,391	11.9	8.8
인도	2,530	6,178	10,192	13.7	8.3
인도네시아	1,646	4,734	5,699	7.2	5.5
이스라엘	482	729	428	2.3	0.9
일본	568	534	485	0.1	0.1
요르단	11	115	1,257	6.1	24.3
한국	7,898	5,027	2,183	2.9	0.7
라오스	0	98	112		
레소토	NA	161	445	73.1	64.1
마카오	1,111	1,849	1,610	72.8	43.0
마다가스카르	11	309	537	37.4	56.4
말레이시아	1,315	2,257	2,842	2.3	1.8
모리셔스	607	948	772	60.9	35.5
멕시코	587	8,631	6,325	5.2	2.5
몰도바	NA	76	200	16.0	19.1
모로코	722	2,401	3,238	32.3	25.5
파키스탄	1,014	2,144	3,907	23.8	23.1
페루	120	504	1,204	7.2	5.1

필리핀	1,733	2,536	2,604	6.4	5.5
루마니아	363	2,328	4,423	22.5	13.7
싱가포르	1,588	1,825	1,985	1.3	0.7
스리랑카	638	2,812	3,046	51.8	44.2
스위스	686	607	1,620	0.8	1.1
대만	3,987	3,015	1,393	2.0	0.7
태국	2,817	3,759	4,257	5.4	3.3
튀니지	1,126	2,227	3,174	38.1	27.6
터키	3,331	6,533	11,882	23.5	13.9
우크라이나	NA	417	82	2.9	1.8
아랍 에미리트(UAE)	146	464	624	0.9	0.4
미국	2,565	8,629	4,876	1.1	0.5
베트남	NA	1,821	5,201	12.6	14.9

출처: Comtrade

있다. 이 또한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동안 MFA라는 제도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인도의 경우도 중국과 같이 MFA 철회기간 동안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만과 한국의 경우에는 MFA 폐지 이후 수출량이 급증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 국가가 MFA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경제 중심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집약산업이 쇠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 의류섬유 산업이 이들 국가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MFA가 시행되는 동안, 주요 수출국들의 TNC들은 쿼터 제약을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그 지역 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전 및 외주의 대상 지역으로 주로 최빈개도국이 고려되었는데, 그 이유는 의류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빈개도국들은 EU와 미국 등 주요 수입국 시장에 접근할 때 쿼터 제약을 받지 않을뿐더러 무쿼터 및 무관세와 같은 무역특혜제도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이동하고자 하는 TNC와 최빈개도국이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최빈개도국의 협상력을 높이게 되었고, 결국 주요 수출국의 TNC들이 최빈개도국으로 이동하여 생산지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Ahmed, 2009).

주요 수출국이 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확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유의성이 높은 중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기업인 ‘Shaoxing Guangda International Trade Company Ltd.’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거 투자를 하였다. 중국의 미국 수출 성장률 쿼터가 2008년까지 7.5%였기 때문에 이 기업은 캄보디아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면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이의 이유를, ‘미국과 EU 회원국이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섬유에는 쿼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다(Frost et al., 2002).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이 MFA인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화폐 절상과 무역특혜 혜택(GSP)이 이유라는 자료는 존재한다(Rasiah & Ofreneo, 2009). 무역특혜제도가 원인 중 일부였다면, 이와 유사한 논리로 MFA로 인한 제약 또한 이전의 주요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3) 최빈개도국-생산지리의 형성

MFA라는 국제 규제에 의해 쿼터 부과국이었던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켜냈고 기존 주요 수출국들은 생산 및 수출기회를 제약 당했다면, 최빈개도국들은 MFA로 인해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을 누렸다. 자원에 의존한 일차산업 위주의 국가들이 제조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온전히 MFA 때문이기보다는 무역특혜제도(TP: Trade Preference)와 같은 또 다른 국제제도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값싼 노동력과 같이 의류산업에서 중요한 지역적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MFA와 무역특혜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의 변화 없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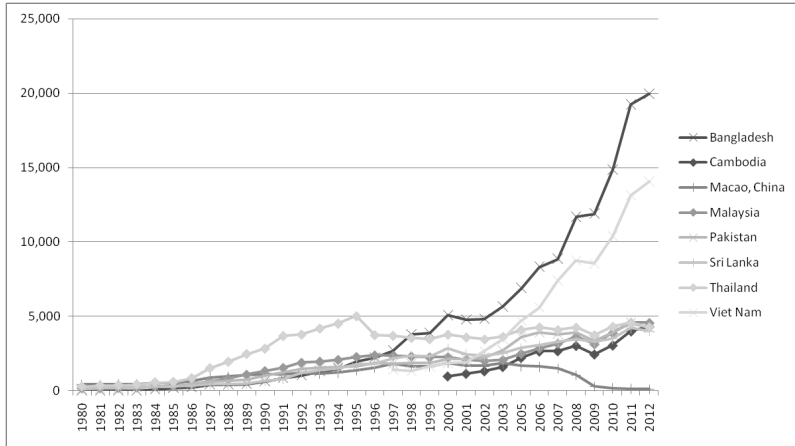
TNC들의 투자가 이뤄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주요 투자요인인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하고, 정치적·제도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인력의 숙련도도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적·문화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MFA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 최빈개도국에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MFA가 시행되고 무역특혜제도가 시행되자 이들 지역의 매력도는 증가하게 되었다. MFA로 인해 기존 주요 수출국들에 제약이 생겨 이들 국가의 TNC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반면 무역특혜제도로 인해 최빈개도국이 가지는 지역적 매력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최빈개도국의 투자 유인이 높아졌다(Collier & Venables, 2007).

이러한 무역특혜제도에는 미국이 2000년에 실시한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와 EU의 EBA(Everything-But-Arms), 그 외 OECD 국가들이 개도국에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있다(Yu & Jensen, 2005). AGOA는 최빈국이 물려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적 일차 산업 혹은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요 수출품목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무관세 등의 혜택은 해당 산업의 기존 관세가 높지 않았더라도 타 국가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매우 도움이 된다. 동일한 이유로 AGOA와 같은 무역특혜제도는 아프리카국가들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게 되는 또 다른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지역적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1년 EU가 시행한 EBA는 말 그대로 ‘무기’를 제외하고는 48개 최빈개도국들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무쿼터·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생산물인 농산물의 경우 주요 수출 시장인 EU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는 농산물뿐 아니라 의류 섬유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요 수출개도국은 물론이고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TNC들도 이들 지역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거나



<그림 6> 아시아 국가들의 의류산업 수출액

(단위: US\$, mn)



자료: WTO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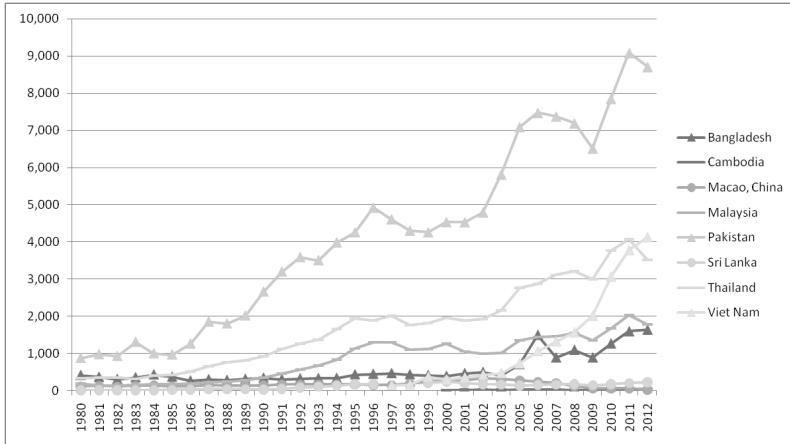
외주를 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최빈개도국들은 그간 거의 전무했던 제조업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Collier & Venables, 2007).

MFA와 무역특혜제도로 인해 의류섬유산업의 생산기지가 설립되기 시작한 최빈개도국들은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MFA 이후 의류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위의 그림을 보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급성장을 이루고는 있지만, 중국에 병합된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성장 폭의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FA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인 2005년부터는 그동안 쿼터의 제제를 받았던 중국과 같은 국가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면서 일부 국가들의 성장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급감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베트남의 경우 성장추세가 둔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조업의 기반과 경쟁력이 MFA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치가 포획되고 지리적으로 착근된 정도가 매우 높아 꾸준히 가치를 생성

&lt;그림 7&gt; 아시아 국가들의 섬유산업 수출액

(단위: US\$, mn)



자료: WTO database

한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파키스탄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의류산업과 마찬가지로 MFA가 시행되던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모든 국가의 수출액이 소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MFA가 철회됨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고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아시아 지역의 의류섬유산업은 MFA의 시행과 철회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MFA 기간 이후로 전반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별적 사례 연구를 통해 원인을 추적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2002년 정치적 소요로 인해 특별수출지구(Export Processing Zone)을 8개월간 폐쇄한 적이 있다(Collier & Venables, 2007). 이로 인해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GPN 내에서 가치 창출과 포획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

<그림 8>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류산업 수출액

(단위: US\$, mn)



자료: WTO database

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량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볼 때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적 안정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MFA로 인해 최빈개도국들에 생산기지가 설립되는 기회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모두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성장한 것은 아니다. MFA가 GPN의 기존 전략적 결함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산지리가 이동되었으나, 각 지역의 자산과 대응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지역성장의 결과가 나타났다. 모리셔스의 경우 매우 성공적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 이는 친 FDI 정책, 이중 언어 사용 인력, 인프라 구비, 제도, 문화적 유사성(아시아와 유럽), 정치적 안정성, EU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 수출자유지구(MEPZ) 형성 등의 비교우위 때문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Subramanian and Roy(2001)는 제도 투명성, 부패, rent-seeking 통제 등을 꼽았고, Bräutigam(2003)와 Hein(1988), Lincoln(2006), Rogerson(1993)은 공통적으로 문화적, 사업적 환경이 아시아 유럽과 유사한 것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GPN의 지역 내 착근은 모리셔스의 국내 제조업 성장으로 이어져 ‘Floréal Knitwear Limited’과 ‘Tropic Knits Limited’ 등과 같은 의류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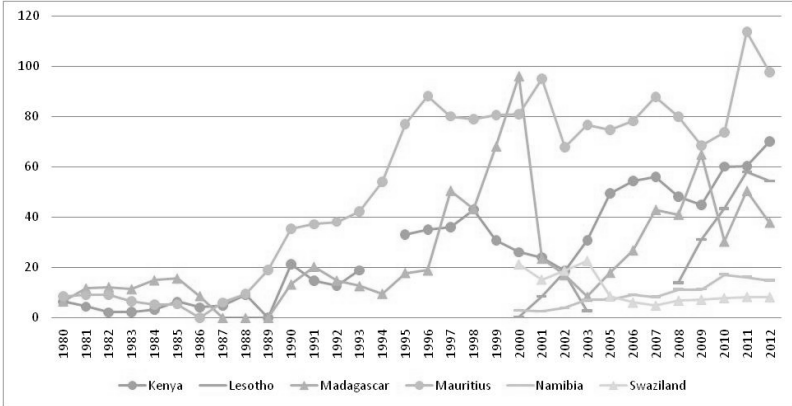
기업이 생겨났고, 나아가 ‘Aquarelle Clothing Limited’와 같은 기업은 마다가스카르에, ‘Compagnie Mauricienne de Textile(CMT) Ltd’는 방글라데시에 해외 투자(reorganization)를 하기도 하였다(Peercally & Cantwell, 2012).

이러한 모리셔스의 사례는 가나와 대비되는데, 두 국가 모두 거시경제 정책은 비슷하나 가나의 경우에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 생산의 비효율성,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등으로 인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다(Teal, 1999). 즉 양국은 MFA와 무역특혜제도 등 동일한 규제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각각의 자산과 대응의 차이로 인해 GPN과의 전략적 결합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지역의 대응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자산 중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및 정치의 안정성, 친 FDI 정책, 인프라 구비, 제도 투명성과 부패 및 지대 추구 활동의 통제는 모두 개도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빈개도국이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에게는 저가의 노동력이 거의 유일한 자산이지만 이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업 환경은 너무도 열악하여 이러한 요소마저도 강점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유독 일부 국가가 TNC들과 전략적 결합을 많이 맺어 지역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 정부가 지역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매력도를 증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 이유는 기술이나 발달된 인프라 등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며,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 보아도 이들 개도국들이 그리 구매력이 높을 것 같진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방글라데시의 경우 1987년부터 상당한 규제의 자유화를 이뤄 무려 257개에 달하던 수입 통제 항목이 2002년에 27개로 대폭 줄었다(Ahmed, 2009). 또한 모리셔스와 레소토와 같이 자국의 산업전략을 수립할 때 MFA와 같은 국제제도의 요소를 고려한 국가들이 이를 더욱 더 잘 활용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구체적으로 최빈개도국에 투자한 TNC로는 홍콩의 ‘Novel Denim Holdings Ltd’를 들 수 있다. 이의 자회사인 ‘Novel Textiles Ltd, Novel

<그림 9> 아프리카 국가들의 섬유산업 수출액

(단위: US\$, mn)



자료: WTO database

Garments Ltd’는 ‘guess’라는 브랜드의 청바지를 생산해서 EU와 미국에 수출한다. 이들의 2001년 1사분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상승하여 미화 31.4백만 달러에서 37.2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MFA가 폐지되자 마다가스카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공장은 폐쇄하고 모리셔스의 공장들도 상당수 조정하였으며, 아시아에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라인들은 최종적으로 2005년 모리셔스와 이태리 합작회사에 의해 인수되었다(Peerially & Cantwell, 2012). 이러한 사례는 MFA로 인한 생산지리의 이동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 4. 결론 및 함의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 규제는 지리적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GPN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

며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WTO 규제의 경우 차별적·비차별적, 제한적·촉진적 차원으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었다. WTO의 목표상 대부분의 규제가 비차별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예외적으로 차별적·제한적 성격의 규제들은 특정 지역이 전략적으로 결합한 GPN과 분리(decoupling)하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던 TNC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때 TNC들과 새로운 투자 지역들은 서로의 필요와 보유자원, 제약 요소에 따라 결정된 협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전략적 결합을 이루고, 이에 따라 생산지리가 변화하면서 지역 성장의 지형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MFA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의류섬유 산업에 한하여 주요 수출개도국들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TNC들은 기존의 주요 수출국 생산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역특혜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최빈개도국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늘어난 협상력으로 TNC들과 성공적으로 전략적 결합을 이루어 결국 가치를 창출, 강화, 포획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최빈개도국 가운데서도 지역적 자산과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 성공적으로 GPN에 편입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었고, 이는 국제 규제가 분명 GPN의 운용과 지역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되 행위자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국제규제가 GPN 내에 가져오는 역동성과 변화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지금도 개념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GPN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TNC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기업 외 행위자들 중에서도, 국제규제는 특히나 그 중요성이 인식은 되면서도 실제적인 분석과 논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영역이다. 서두에 밝혔듯이 Coe et al.(2008)이 연구의 필요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이에 주목한 연구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GPN 논의에서 과제와 같이 남아있던

미탐구 영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가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각 지역의 정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국제규제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여 국제무대에서 선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에 힘써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규제 및 제도가 지역경제의 성장에 함의하는 비는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늘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실 국제규제 및 제도는 해당 영역에 관한 전문 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많아 협상자리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자국의 이해관계가 협상안에 반영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적극 관철하는 등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지역성장을 위한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규제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성장 전략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기술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자국 무역에 영향이 큰 국가들과는 기술상호인증의 양자 협정을 맺어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장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자국 산업의 기술표준을 국제규제에 맞추어 해외시장에서의 유통에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갈 뿐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규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므로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국제적 규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해석과 적용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데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복수의 FTA가 체결되는 최근 상황에서 정부가 FTA 이해를 위한 웹 사이트 운영과 책자 등을 발행한 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적 원조와 관련한 함의가 있다. 효과적 원조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도울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공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결과물인 정책보고서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개도국의 지역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제 규제 체제에 대한 교육과 활용 노하우 등을 전달한다면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최빈 개도국의 경우 국제 규정 및 제도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협상대표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협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MFA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규제가 자국 성장에 함의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기에, 향후 대외 원조에서 무역제도 등과 관련된 실질적 자문이나 교육이 이뤄진다면 원조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원조기구들 간의 담론에서도 단순한 물적 원조의 증가가 아닌 무역특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하여 국제원조의 방향이 다양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 접근 방법에서 기인한 문제로,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규제로 인한 다양한 국가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과 GPN의 전략적 결합의 협상주체인 국가와 TNC 위주로 바라보게 되고, GPN의 상세한 메커니즘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GPN들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와 구성요소들의 복잡다단한 관계의 변화, 혹은 특정 지역에 착근되어 있으면



서 동시에 외부 지역 혹은 또 다른 지리적 규모의 GPN과 연결되는 GPN의 역동성을 상세하게 추적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수출입의 변화를 단순히 지역성장으로 간주하거나 추정하는 단순성을 보이게 되었다. 수출입의 변화가 진정 지역성장에 기여했는지에 관해 한 단계 더 깊은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연구의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사례 연구를 통해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국제규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 커다란 그림을 이해한 것으로 만족하고, 보다 상세한 메커니즘의 분석과 과정 탐구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는 충분한 연구적 가치와 의의가 있는 영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어 국제규제로 인한 GPN의 변화와 지역발전의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길 기대해본다.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3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6월 15일

## ❖ Abstrac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gional Growth:  
A Case Study of Multifiber Arrangement of WTO

Choi Eun-K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institutions on the geography of a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nd its consequent regional growth. The GPN theory, which the paper draws upon, explains well how various actors such as firms, states, and CSOs are interconnected in a multi-scalar geographical structures and how they produce, distribute, and consume goods and services within the network. The literature so far, however, pays little attention to non-firm actors, especially to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that all GPNs are embedded within. Their significance is widely recognized, but empirical stud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For the reason, the paper aims at conceptualizing 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affect the dynamics among actors within GPNs and a strategic coupling process between TNCs in a GPN and a region(or regional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then explored and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 WTO/MFA(Multifibre Arrangement).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MFA has changed the geography of GPNs and resulted in different regional growth in the three groups of countries—advanced industrial, main exporting, and least development.

Keywords: GPN, international regulations, regional development, production geography, WTO/MFA

## 참고문헌

- 김선혁. 2008. 「세계화와 행정: 이론적 성찰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비정기 학술발표논문집》 단일호, 1~21쪽.
- Ahmed, N. 2009. "Sustaining ready-made garment exports from Bangladesh."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9(4), pp. 597~618.
- Bräutigam, D. 2003. "Close encounters: Chinese business networks as industrial catalysts in Sub-Saharan Africa." *African Affairs*, 102(408), pp. 447~467.
- Coe, N. M., Dicken, P., & Hess, M. 2008.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alizing the potential."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3), pp. 271~295.
- Coe, N. M., Hess, M., Yeung, H. W. C., Dicken, P., & Henderson, J. 2004.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a global production networks perspectiv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9(4), pp. 468~484.
- Collier, P., & Venables, A. J. 2007. "Rethinking trade preferences: how Africa can diversify its exports." *The World Economy*, 30(8), pp. 1326~1345.
- Dicken, P.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Sage Publications Ltd.
- Frost, S., Pandita, S., & Hewison, K. 2002. "The Implications For Labor of Chinas Direct Investment In Cambodia." *Asian Perspective*, 26(4), pp. 201~226.
- Hein, P. 1989.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an island country: The Mauritius export processing zone(1971 to 1988)." *Unctad Review*, 1(2), pp. 41~58.
- Henderson, Jeffrey, Dicken, Peter, Hess, Martin, Coe, Neil and Yeung, Henry Waichung.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3), pp. 436~464.
- Henderson, J., Dicken, P., Hess, M., Coe, N., & Yeung, H. W.-C.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3), pp. 436~464.
- Kim, S. 2011. "Globalization and national responses: the case of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6(2), pp. 165~179.
- Lincoln, D. 2006. "Beyond the plantation: Mauritius in the global division of labour."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4(01), pp. 59~78.
- MacKinnon, D. 2012. "Beyond strategic coupling: reassessing the firm-region nexu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1), pp. 227~245.
- \_\_\_\_\_. 2013. "Strategic Coupling and Regional Development in Resource Economies: the case of the Pilbara." *Australian Geographer*. 44(3), pp. 305~321.

- doi: 10.1080/00049182.2013.817039.
- Naumann, E. 2006. *The Multifibre Agreement - WTO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Tralac Working Paper no. 4. Retrieved from <http://www.fibre2fashion.com/industry-article/pdffiles/the-multifibre-agreement.pdf>
- Nordås, H. K. 2004. *The Global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ost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WTO Discussion paper No. 5. Retrieved from [http://www.tn-o.it/tecno\\_it/fashion4\\_2\\_05/documenti/WTO%20Discussion%20Paper%20Textile%20and%20Clothing%20after%202005.pdf](http://www.tn-o.it/tecno_it/fashion4_2_05/documenti/WTO%20Discussion%20Paper%20Textile%20and%20Clothing%20after%202005.pdf).
- Peerally, J. A., & Cantwell, J. A. 2012. "Changes in trade policies and the heterogeneity of domestic and multinational firms' strategic response: the effects on firm-level capabilities." *World development*, 40(3), pp. 469~485.
- Rasiah, R., & Ofreneo, R. E. 2009. "Introduction: The dynamics of textile and garment manufacturing in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9(4), pp. 501~511.
- Rogerson, C. M. 1993. "Export processing industrialisation in Mauritius: The lessons of success." *Development Southern Africa*, 10(2), pp. 177~197.
- Subramanian, A., & Roy, D. 2001. *Who Can Explain the Mauritian Miracle: Meade, Romer, Sachs, or Rodrik?*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trieved from <http://www.imf.org/external/pubs/ft/wp/2001/wp01116.pdf>.
- Teal, F. 1999. "Why can Mauritius export manufactures and Ghana not?" *The World Economy*, 22(7), pp. 981~993.
- Wei, Y. H. D., & Liao, F. H. F. 2013. "The embeddednes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Chinese cities: Strategic coupling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Habitat International*, 40, pp. 82~90. doi: 10.1016/j.habitatint.2013.01.005.
- Winham, G. 2005. "The evolution of the global trade regime." in Ravenhill, John(ed.) *Global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pp. 87~115.
- Yang, C. 2013. "From Strategic Coupling to Recoupling and Decoupling: Restructuring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Evolution in China." *European Planning Studies*, 21(7), pp. 1046~1063. doi: 10.1080/09654313.2013.733852
- Yang, D. Y.-R., Hsu, J.-Y., & Ching, C.-H. 2009. "Revisiting the Silicon Island? The geographically varied 'strategic coupling' in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parks in Taiwan." *Regional Studies*, 43(3), pp. 369~384.
- Yu, W., & Jensen, T. V. 2005. "Tariff preferences, WTO negotiations and the LDCs: the case of the '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 *The World Economy*, 28(3), pp. 375~405.

법률조항

GATT. 1986. *The Tex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eneva: GATT.

웹페이지 검색

UN Comtrade database: <http://unstats.un.org/unsd/comtrade/>(2014.6.5).

WTO Website: [www.wto.org](http://www.wto.org)(2014.6.5).